공상 처리를 요구하는 노동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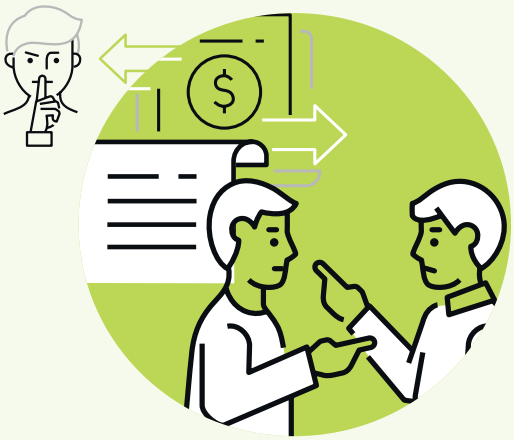

Q **사업장에서 사고를 입은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처리를 안내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공상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공상 처리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얻은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와 합의해 산재보험 처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후유증과 재발이 우려될 경우를 감안해 보상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요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피하고자 공상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산재 발생률이 높을수록 입찰확률이 낮아져 공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공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빨리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재보상보다 금액이 적을 수 있을뿐더러 최초 상병 발생 이후 증상이 악화하여 치료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고 공상 처리를 했더라도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권은 공법적인 관계에서 정해지는 권리이지만, 공상 처리는 노동자와 회사가 한 합의로 공법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까닭에 공상 처리 시 사업주가 산재 은폐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또,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노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산재 발생 시 산재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노동자가 공상 처리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

구분	반응	
	명	%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다	13	7.9
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다	29	17.6
산재보험급여보다 공상처리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많다	35	21.2
상병이 경미하다	53	32.1
휴업 기간 동료 노동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20	12.1
휴업 기간 이후 복직 시 원직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5	3.0
기타	10	6.1
전체	165	100.0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재발생보고 통계 중 요양 미신청 산재사고 실태 현황 분석 연구 (2019)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52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